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058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간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시 조정절차를 명확히 고시에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신설(개정안 제13조)

-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분쟁 당사자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금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 권고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 통지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항 삭제 (고시 제9조)

3. 의견제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